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033
----------	-------

발의연월일 : 2026. 7. 20.

발 의 자 : 김주영 · 문정복 · 홍기원
김태선 · 이건태 · 이학영
박균택 · 장철민 · 임호선
박해철 · 허종식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경기 둔화와 노동시장 위축이 지속되면서 청년들이 체감하는 고용 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임. 특히 안정적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어, 공공부문이 청년고용 확대에 보다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 비율을 현행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에서 100분의 5 이상으로 상향하고, 해당 고용의무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청년들에게 보

다 안정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5조 등).

법률 제 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100분의 3”을 “100분의 5”로 한다.

법률 제11792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2026년”을 “2031년”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정원의 <u>100분의 3</u>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① ----- ----- ----- ----- ----- ----- <u>100분의 5</u> ----- ----- -----. ----- ----- ----- -----.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법률 제11792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법률 제11792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유효기간) 제5조의 개정규정은 <u>2026년</u>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2조(유효기간) ----- ----- <u>2031년</u> ----- -----.